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1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남인순·홍성국·이탄희

양이원영 · 박홍근 · 진선미

최혜영 · 조오섭 · 유미향

박성준 · 양정숙 · 김영배

황운하 · 고영인 · 김승원

권칠승 · 김상희 · 박영순

권인숙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을 "피해자에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 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제1항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재정적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을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으로 하고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의 <u>금지</u>) 누구든지 피해자를	의 <u>금지 등</u>) <u>①</u>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u>피해자를 해고하거나</u>	<u></u> 피해자에게 다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니 된다.	는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u><신 설></u>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u>조치</u>
<u> <신 설></u>	<u>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u>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u> <신 설></u>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
	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u> <신 설></u>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
	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
	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
\ \ \ \ \ \ \ \ \ \ \ \ \ \ \ \ \ \ \	그 기어느러 제비 미 창사이 이
<u> <신 설></u>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
	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 제3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을 위 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 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 는 취급자격의 취소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 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는 불이익 조치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제1항에 따른 불이 의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 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 을 한----------3천만원-----